

(앞 쪽)

등록번호		폐수 ☐ 수탁처리업 ☐ 재이용업		변경등록신청서		처리기간
제 호						10일
신청인	①상호(명 칭)			사업자등록번호		
	②성명(대 표 자)			주 민 등 록 번 호		
	③주 소			(전화번호 :)		
④사 업 장 소 재 지				(전화번호 :)		
⑤작 공 예 정 일		년 월 일	⑥설치완료예정일	년 월 일		
⑦변 경 등 록 내 역						
변경 등록 사항		변 경 전		변 경 후		변 경 사 유
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62조 후단,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제6항에 따라 ☐ 폐수수탁처리업 ☐ 폐수재이용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귀하						
※ 구비서류						수수료
1. 폐수수탁처리업 또는 폐수재이용업등록증 원본.						각 5,000원
2.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						
가. 폐수처리용량·방법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 :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(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)						
나.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(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) : 상호변경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						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: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					
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		

(뒤 쪽)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